
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의 안 번 호	2446
------------	------

2021. 6. 21.
도시계획관리위원회
수 석 전 문 위 원

1. 제안경위

- 2021. 5. 27. 박순규 의원 발의 (2021. 6. 1. 회부)

2. 제안이유

- 2011년 3월 제정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은 개인정보의 수집·유출·오용·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으로 허용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(제24조의2제1항제1호~제3호)에만 예외적으로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별지는 해당되지 않음.
- 조례의 별지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(제1호)에는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음.
-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·도의 경우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음. 서울 시민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별지 서식의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대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자란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변경함(별지 서식).

4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,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조례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임.

현 행				개 정 안			
[별지 제1호 서식]				[별지 제1호 서식]			
제 호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			처리 기간	제 호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			----
			30일				----
신청 자	① 성 명 (대표자)		② 주민등록번호	① ----- -----		② 생년월일	
	③ 업 소 명 (단 체 · 법 인)			③ ----- -----			
	④ 주 소			④ -----			
⑤ 영업장 소재지			⑥ 전 화 번 호	⑤ -----		⑥ -----	
이하 생략				이하 생략			

-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(붙임1) 법령에서 허용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, 이 조례 서식에서(별지 제1호 서식) 개인정보 보호법의 예외적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어, 이 개정조례안은 위법사항을 시정하는 성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‘11년부터 개인정보 보호법(‘11.3. 제정)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·오용·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해 왔음에도 이 조례 서식이 그 동안 개정되지 않은 것은, 해당 서식이(교육위탁 지정 신청서)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사실상 사문화된 문서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나¹⁾,
- 이 조례 뿐 아니라, 각 자치구의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및 서식 등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규정·서식 점검 권고 등 서울시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담당자	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정희
연락처	02-2180-8206
이메일	rienrien@seoul.go.kr

1)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사안이나, 2개 이상 자치구 통합 교육이 요청될 경우에는 서울시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, 자치구·서울시 모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가운데(붙임1), 자치구에서 옥외광고협회(오프라인)·한국지방재정공제회(온라인)에 교육 위탁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교육을 실시한 바 없어 서울시 교육위탁을 위한 서식도(서울시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) 사용된 바 없음
 ※ 서울시 옥외광고사업자 등록 현황: 3,144 (개인 2,271, 법인 873)

〈붙임 1〉 관련 법규

개인정보 보호법

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

1. 법률·대통령령·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
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
제12조(광고물등에 관한 교육)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·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·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장등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이 다른 시·군·자치구와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·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④ 시장등과 시·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, 자격,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50조(교육의 위탁 등)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.

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, 수강절차,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한다.

